

특 허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0허9316 등록무효(디)
원 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중효, 한정원
피 고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영철
변 론 종 결 2011. 4. 8.
판 결 선 고 2011. 4.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10. 10. 29. 2010당128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8. 7. 10./ 2009. 7. 17./ 제534882호

2) 대상 물품 : 헤어클립

3) 디자인의 설명, 형상과 모양 : 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대용 사진과 같다.

4) 디자인권자 : 원고

나. 비교대상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1. 7. 4./ 2002. 5. 17./ 제299116호

2) 대상 물품 : 헤어클립

3) 디자인의 설명, 형상과 모양 : 별지 2 비교대상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과 같다.

4) 디자인권자 : 피고 양영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들은 2010. 5. 14.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일 전에 먼저 출원되고 등록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거나 이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2010당1282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0. 10. 29.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먼저 출원되어 등록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이 유사한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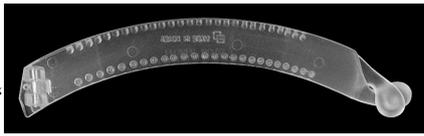
가. 판단기준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등 참조), 그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물품은 모두 “헤어클립”으로서, 헤어클립은 머리를 묶도록 쌍으로 이루어진 몸체와 그 몸체를 결합시키는 체결구 및 몸체 안쪽으로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를 매어 주는 톱니바퀴로 구성되는데, 전체 물품에서 몸체가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실제 거래 시나 사용 시 몸체 부분의 형상과 모양이 일반 수요자들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이라고 할 것이니, 양 디자인에서 디자인의 미감적 특징을 나타내는 가장 주된 요부는 몸체 부분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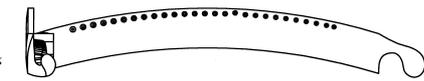
나아가 이러한 몸체 부분의 형상과 모양이 잘 드러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정면도 및 배면도와 비교대상디자인의 평면도 및 저면도를 중심으로 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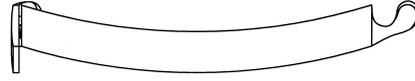
’



’과 비교대상디자인



’



’를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모두 표면에 특별한 모양 혹은 장식이 되어 있지 않은 몸체가 한쪽 방향으로 굴곡되어 흡사 바나나에 유사한 형상을 하고 있는 점(속칭 ‘바나나핀’이라고도 불리운다)에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달리 몸체 양측 끝 모서리 부분에 경사각이 형성되어 있어 테두리가 세모지게 나온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몸체 굴곡의 정도 및 체결구 끝에 달린 둥근 고리의 크기가 비교대상디자인보다 조금 더 큰 점 등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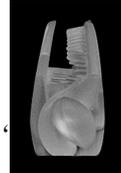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 정도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는 하기 어렵다.

2)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헤어클립 몸체 전면과 후면이 불룩한지 여부에서도 차이가 있어 서로 심미감이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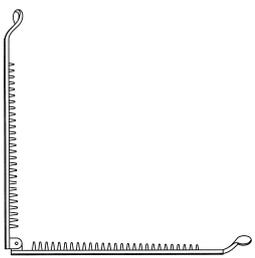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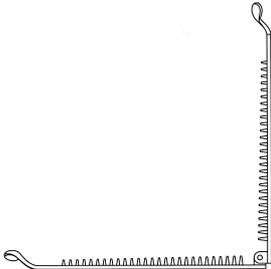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좌측면도 ‘



’ 및 우측면도 ‘



’와 비교대상디자인의

정면도 ‘’ 및 배면도 ‘’를 대비하면, 이 사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헤어클립 몸체의 전면과 후면이 완전한 평면이 아니라 완만한 곡선 형태로 약간 볼록하게 형성되어 있는 데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헤어클립 몸체의 전면과 후면이 평평한 표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차이 역시 위에서 본 ‘표면에 특별한 모양 혹은 장식이 되어 있지 않은 몸체가 한쪽 방향으로 굴곡되어 흡사 바나나에 유사한 형상을 하고 있는 양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으로 인한 심미감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결국, 양 디자인은 일부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그 심미감이 유사하여 서로 유사한 디자인이니(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유사의 폭을 좁게 보더라도 위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 무효가 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관사 권택수 _____

관사 박태일 _____

관사 염호준 _____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대용사진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재 또는 금속재임.
2. 본원 헤어클립은 몸체의 전면과 후면에 크리스탈 또는 큐빅 등 다양한 장식품을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임.
3. 본원 헤어클립은 투명한 재질로 정면도와 배면도의 몸체에 보이는 돌기는 투시되어 보이는 모양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헤어클립 디자인은 몸체의 상부 테두리와 하부 테두리가 하향으로 곡선을 이루도록 굴곡되고, 몸체 전면과 후면은 평면이 아닌 곡면으로 형성되어 전체적으로 심플하고, 곡선미와 입체감이 돋보이면서 독특한 미감이 느껴지도록 한 것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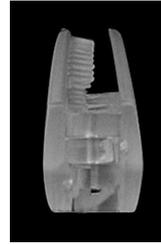
【도면 대용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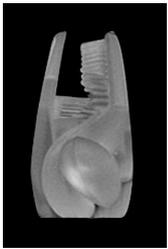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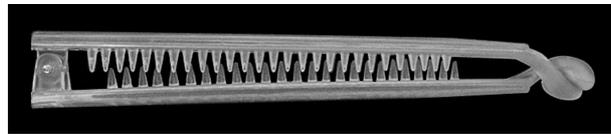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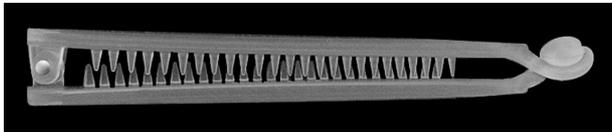
[우측면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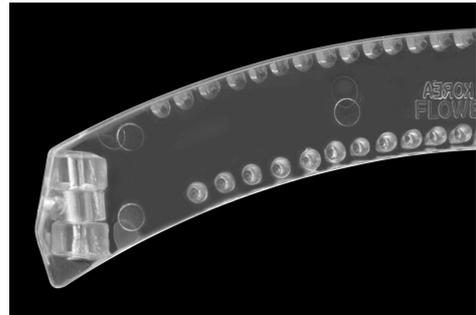
[저면도]



[참고도 1]



[참고도 2]



끝.

비교대상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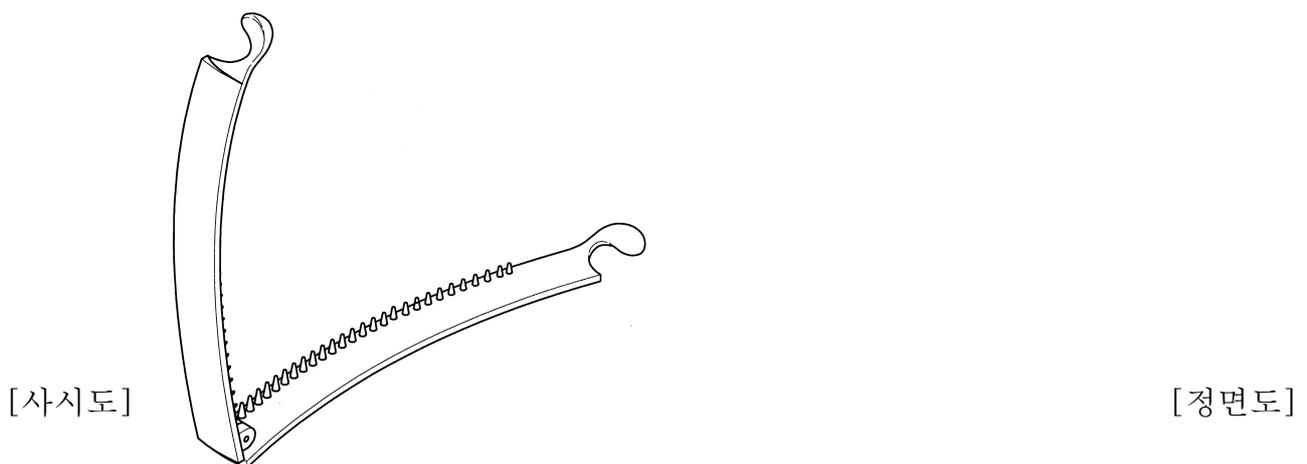
【디자인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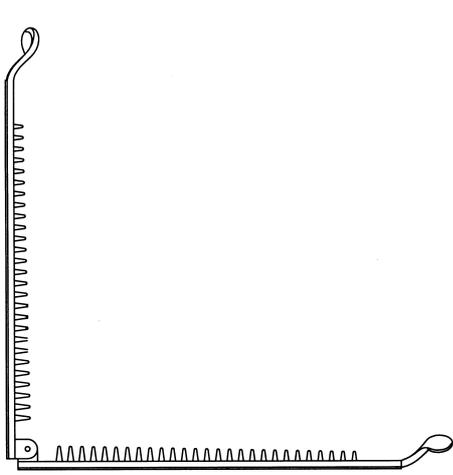
1. 재질은 합성수지재 및 금속재임.
2. 본 물품은 머리카락을 파지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며, 참고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시에는 상, 하측 결합편을 맞물리도록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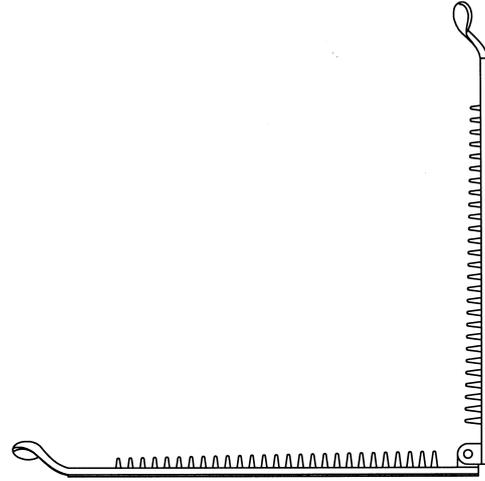
본원 헤어클립 디자인은 상, 하부 클립을 하나의 큰 곡선으로 처리하여 종래의 직선으로 처리되었던 헤어클립에 비해 부드러움을 강조한 것이며, 상기 본원 디자인의 결합구는 손 모양으로 형성되어 상, 하부 클립이 체결 시 두 손으로 포개진 형상을 연상케하여 그 형상의 독특함을 부각시킨 것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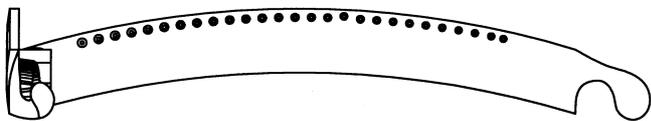
[좌측면]



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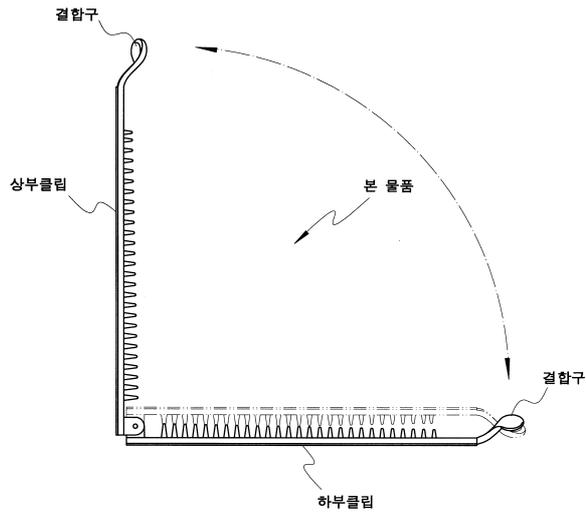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



끝.